

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안미강¹, 이수지², 박성재^{3*}

¹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²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석사, ³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박사수료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Entertain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i-Gang Ahn¹, Su-Ji Lee², Sung-Jae Park^{3*}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²Master, Department of Account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³Ph. 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 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주제어 :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조사 선정률, 세무조사 적발률, 접대비, 종합건설업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probability of a tax investigation by the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could reduce the entertainment expense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a tax investigation can reduce excessive discretionary expenses of firms. Among the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from 2011 to 2018, 274 firms with sales exceeding 10 billion won in the previous year were targeted at the tax audit selection rate and the tax audit detection rate, which is a proxy for the possibility of a tax investigation. The effect of the ratio of entertainment expenses to sales and the increase rate of entertainment expenses was ver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the selection rate and the detection rate of the tax investigation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roxy variable of the discretionary expenses measured as the propor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increase rate of entertainment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ax investigation is a means to curb the excessive expenditure of the firm's discretionary expenses, thus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the taxation poli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investigation.

Key Words : probability of tax investigation, selection rate, detection rate, entertainment expenses,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Corresponding Author : Sung-Jae Park(miyoun3008@naver.com)

Received February 2,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February 25,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경영자는 영업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기업들의 비용 지출 행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접대비 지출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비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1]. 이렇게 비정상적인 지출활동이 누적될 경우 기업들은 자금관리가 부실해져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고, 이 때 매년 익금 산입되는 부분만큼 법인세 납부가 증가한다. 따라서 지나친 가지급금 인식은 기업의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가져오며, 접대비와 같은 재량적 비용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거나 증빙이 어려운 지출은 경영자의 사적소비로 인식될 수 있다[2]. 특히 영업 관례상 리베이트, 접대비 등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건설업의 부실자산으로 평가되거나 그 크기가 클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접대비 손금한도 규제와 세무조사 가능성으로 인해 세무조사 시 추정세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적절한 접대비를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과세당국에게 과도한 접대비 관리에 대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율인하와 접대비 지출 간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접대비의사결정은 한도초과기업에서 최적접대비에 세율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정책에 따라 접대비 지출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이 그 본질적인 특성상 대리인 문제로 인한 재량적 비용의 인식이 다른 업종과 상이하므로 건설업의 비정상적인 접대 가능성과 지출의 재량성을 고려하여 국제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접대비 과다지출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4], 다른 업종에 비해 비정상적인 접대가 이루어진다는 관례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설업에서 그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고자 과세당국은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조정하거나 접대비 실명제 등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에 따른 일시적인 재량적 비용 인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무조사는 기업의 성실신고율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등 기업의 납세응을 가져온다[5]. 그러나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세금납부를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이나[6], 늘어나는 손금불산입액 대상 항목의 감소 회계처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로 인한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다른 업종과 달리 접대비 비중이 판매관리비 중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필수경비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업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대표적인 재량적 비용인 접대비를 줄이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가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과도한 접대비 지출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세무조사 가능성과 재량적 비용과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측정하고,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대용변수로 국제청의 공시자료를 이용한 세무조사 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을 변수로 사용한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에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업의 대표적 재량적 비용인 접대비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로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관련연구에 갖는 의미가 클 것이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의 대용변수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재량적 비용과의 관계, 또는 비용대체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에 선정될 확률과 신고금액의 적발 가능성을 세무위험 변수로 측정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건설업의 특성과 재량적 비용 인식 및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가설을 설정하며, 제3장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표본선정 과정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결과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건설업의 특성과 재량적 비용 인식

건설업은 주문형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이 사업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 제조업과 가장 큰 차이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일정 규격이나 반복 생산이 아닌 일회성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영위된다[7]. 또한 수주 상품의 건설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다른 제조업과 수익 인식기

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공사수익과 원가를 해당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과 대규모 주문생산의 사업 진행은 기대수익과 함께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투자나 지출 관련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전반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절차로 인하여 경영자는 편법을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부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명성 문제가 야기된다. 이 때 경영자는 필요 이상의 접대활동을 하거나 대리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재량적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의사결정을 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접대비는 건설업의 특성상 그 지출에 신중성이 요구되지만 경영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사적소비가 이루어지거나 과도하게 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8,9]. 또는 필수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손금산입 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등의 대체가능 비용 변수로 이전되기도 한다[10]. 재량적 비용의 지출은 기업지배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박종일(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사회 특성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활동성이 지나친 소비성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 지출을 억제한다고 하였다[11]. 따라서 기업 특성에 따라 대표적인 재량적 비용인 접대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대비의 효율적인 지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나 당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2.2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국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역기능을 가질 수 있어 지나친 접대비 지출을 통제할 장치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문태와 권현주(2009)는 신용등급과 접대비 간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접대비 지출 통제 효과를 주장하였다[12]. 접대비는 신용평가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세무당국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아 접대비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접대비 증가율과 추정세액비율 간에도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13].

박종일 등(2019)의 연구에서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변동성으로 측정한 세무위험과 재량적 비용의 대표적인 값인 접대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둘 간의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났다[4]. 이를 통해 기업의 세무위험이 높을 때 경영자는 접대비 수준을 낮추려는 의사결정을 함

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세무위험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위험을 유효세율의 변동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다른 시각에서 심해린 등(2019)은 세무조사 위험을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세무조사 선정률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14]. 결과에서 국내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태도를 예상할 수 있었다.

기업의 세무조사는 대상이 되는 가능성만으로도 세무계획 수립에 큰 비조세비용으로 인식되므로[5], 세무조사 가능성 즉,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을 계산하여 경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태도, 회계처리방식이나 인식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접대비는 GAAP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산입된다. 또한 접대비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출이지만 그 크기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4],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은 법률의 시행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비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접대비와 같은 재량적 비용을 경영자가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을 선정률과 적발률로 측정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서 유사한 기업의 매출액, 동일업종별로 대상을 분류한다. 이에 국세청이 매년 공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직접 조사실적을 검색한 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한정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선정률을 구하였으며, 연도별 변화추이는 Fig1.에 나타냈다. 즉, Fig1은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법인사업자의 조사실적에서 가동법인수와 조사법인수를 추출한 뒤 가동법인 수 대비 조사법인수로 세무조사선정률을 직접 산출한 것이다. Fig.1은 하단에서부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5,000억원 초과인 기업 집단의 연도별 세무조사 선정률을 보여준다. Fig.1에서 1,000억 초과인 기업들의 선정률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들보다 높은 선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14년 선정률이 높은 값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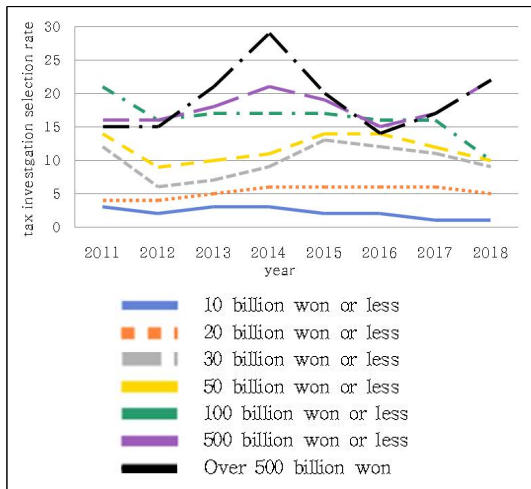


Fig. 1. Tax investigation selection rate by year and sales

2.3 가설설정

기업은 세무조사를 통해 미래 추정세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나 조사대상 선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GAAP하에서 인식하는 비용과 세법 상 인정해 주는 손금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재량적 의사결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인 추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결국 접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일수록 과세소득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므로 현금유출이 증가한다[4]. 이에 기업들은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복리후생비와 같은 다른 재량적 비용으로 대체 회계처리 할 가능성이 있으며[15], 세무조사와 같은 외부조사와 관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접대비 감소 노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즉, 세무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수록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 또는 접대비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아질수록 접대비 지출 (증가율)은 감소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과 함께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Hoopes et al.(2012)은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 즉, 사전확률을 세무조사에 적발될 위험으로 측정하였는데[16], 심해린 등(2019)의 연구에서는 선정률 변수에 추가하여 조사에서 회피 금액

이 적발될 가능성을 사전확률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14].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될 가능성과 함께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금액은 미래 현금유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추정세액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및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추가금액이 적발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 금액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므로 재량적 비용이면서 손금한도액이 있는 접대비 지출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질수록 접대비 지출 (증가율)은 감소할 것이다.

3.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가설 검증을 위해 아래의 식(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NT(ENTG)_{i,t} = \beta_0 + \beta_1 PROB(PRODUCT)_{i,t} + \beta_2 SIZE_{i,t} + \beta_3 DEBT_{i,t} + \beta_4 FOR_{i,t} + \beta_5 OWN_{i,t} + \beta_6 ROA + \beta_7 NI_{i,t} + \beta_8 BIG_{i,t} + \beta_9 KOSDAQ_{i,t} + \varepsilon_{i,t} \quad (1)$$

식(1)에서 종속변수는 세무조사 가능성에 따른 재량적 비용 감소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의 필수 지출 사항이지만 경영자의 사적소비 등 부정적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접대비 비중이다. 접대비 변수는 매출액 대비 접대비와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독립변수인 세무조사 가능성은 세무조사 선정률(PROB)과 세무조사 적발률(PRODUCT)로 측정한다. 이 변수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세무조사 선정률은 법인세 신고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의 비중으로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부터 수입구간을 구분하여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입하였다. 세무조사 적발률은 조사를 받은 기업 중 신고한 소득 금액 대비 조사 이후 결정된 소득금액의 비율을 수입금액 구간별로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측정된 두 세무조사 가능성 변수는 세무조사확률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비용인 접대비를 줄여 성실보고하거

나 추가적인 보고비용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므로 종속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DEBT), 외국인지분율(FOR), 최대주주지분율(OWN), 대형회계법인 감사여부(BIG), 당기순이익여부(NI), 코스닥상장법인 여부(KOSDAQ)를 사용하였다.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인 기업규모는 그 크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대비 지출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17],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18] 접대비 지출에 신중하게 된다. 또한 타인자본에 대한 부채계약 이행의 부담으로 인하여 재량적 비용 지출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 변수도 포함하였다. 재량적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객관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소유구조 특성 변수로 외국인지분율과 최대주주지분율을 포함하였다.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자는 효율적인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끌고 있으며, 그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효과가 더 높아진다[19]. 당기순이익 보고여부는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20],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재량적 비용인 접대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품질이 좋은 기업일수록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형회계법인 감사여부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대형회계법인은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제휴를 맺은 법인이다. 마지막으로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 특성상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비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재량적 통제 정도가 낮을 것

으로 예상되어 상장시장에 대한 더미(dummy)변수도 포함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정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3.2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증권시장(KOSDAQ)에 상장된 건설업이다. 그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인 기업과 연구기간 동안 재무 자료 이용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인 기업
- (2) 12월말 결산법인
- (3) 자본잠식 또는 관리종목에 속하지 않는 기업
- (4) 재무자료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수집이 가능한 기업

연구기간을 2011년 이후로 설정한 것은 2011년 의무화되기 시작한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으로 인한 것이다.

Table 2. Sample selection

Sample selection	
December year-end and listed firms from 2011 to 2018(with sales exceeding 10 billion won among construction industries)	340
(-) Missing variables data	(57)
(-) outlier	(9)
Final observations	274

Table 1. Variable Definition

variable	definition
ENT	entertainment expenses/sales
ENTG	entertainment ratio increase rate
PROB	Tax investigation selection rate
PRODUCT	Tax investigation detection rate
SIZE	the natural log of total assets
DEBT	total debts/total assets
FOR	foreign shareholders' ownership
OWN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NI	a dummy variable that takes the value of one if net income of positive, zero otherwise
BIG	a dummy variable that takes the value of one if it's audited by big accounting firm, zero otherwise
KOSDAQ	a dummy variable that takes the value of one if it's listed on the KOSDAQ, zero otherwise

분석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된 기업으로 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2012년 국세청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세무조사 선정 비율도 전체 상장법인에서 2%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표본을 한정된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보고시기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변수측정을 위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업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기업은 274개(기업-연도)이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ENT	ENTG	PROB	PRODUCT	SIZE	DEBT	FOR	OWN	ROA	NI	BIG
ENTG	-0.001										
PROB	-0.363***	-0.041									
PRODUCT	-0.555***	-0.025	0.555***								
SIZE	-0.551***	-0.026	0.397***	0.767***							
DEBT	-0.326***	-0.008	0.277***	0.477***	0.488***						
FOR	-0.198***	-0.022	0.082	0.188***	0.365***	0.032					
OWN	0.035	-0.024	0.018	-0.061	-0.181***	-0.025	0.006				
ROA	-0.169***	0.403***	0.173***	0.291***	0.167***	-0.243***	0.080	-0.007			
NI	-0.091	0.052	0.003	0.090	0.003	-0.371***	0.062	-0.029	0.499***		
BIG	-0.314***	-0.079	0.195***	0.457***	0.605***	0.466***	0.037	-0.082	-0.064	-0.103*	
KOSDAQ	0.421***	-0.048	-0.270***	-0.480***	-0.600***	-0.606***	-0.323***	0.034	0.077	0.187***	-0.439***

1) Variable definitions are in Table 1.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percent levels, respectively.

4.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것이다. 종합건설업을 표본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의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 접대로 인한 비용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대비 증가율의 최소값은 -1.000, 최대값은 4.180으로 나타났으며, 표본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23% 정도 접대비가 증가하였다.

세무조사 선정률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0.035, 0.287이며, 적발률은 최소값 0.630, 최대값 0.964이다. 기업 규모와 부채비율의 평균은 각각 26.919, 0.578로 상장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비해 다소 큰 값을 보였다.

4.2 상관관계와 평균차이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한다. 결과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을 사전확률로 측정한 선정률과 적발률이 접대비 및 접대비 증가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접대비 비중과의 분석에서만 보였다.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률이 증가하거나 적발률이 증가한 기업일수록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의 비중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부채비율, ROA, 대형회계법인 감사여

부가 세무조사 가능성 변수들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코스닥 시장 상장여부는 세무조사 성과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s

	mean	S.D	min.	median	max.
ENT	0.001	0.002	0.000	0.001	0.010
ENTG	0.228	2.867	-1.000	0.000	4.180
PROB	0.177	0.047	0.035	0.169	0.287
PRODUCT	0.884	0.077	0.630	0.922	0.964
SIZE	26.919	1.633	23.402	26.921	30.174
DEBT	0.578	0.213	0.081	0.615	0.985
FOR	0.078	0.128	0.000	0.025	0.670
OWN	0.143	0.190	0.000	0.057	0.742
ROA	-0.017	0.176	-1.453	0.012	1.105
NI	0.664	0.473	0.000	1.000	1.000
BIG	0.515	0.501	0.000	1.000	1.000
KOSDAQ	0.423	0.495	0.000	0.000	1.000

1) Variable definitions are in Table 1.

세무조사 가능성에 따라 접대비 및 접대비 증가율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률과 적발률 변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눈 후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Panel A는 세무조사 선정률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차이분석 결과 선정률 크기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의

평균이 더 작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무조사 적발률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Panel B에서도 적발률의 크기가 큰 기업의 접대비 비중이 그렇지 않은 기업 집단보다 더 작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종속변수의 평균차이 분석에서는 선정률 또는 적발률의 크기가 큰 기업 집단의 접대비 증가율 평균값이 더 작은 값을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5. Difference analysis: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High Firms vs Low Firms

panel A. PROB					
Variable	High Firms=137		Low Firms=137		diff
	Mean	Median	Mean	Median	t-value
ENT	0.0006	0.0005	0.0015	0.0008	-4.7381
ENTG	0.0507	0.0000	0.4046	0.0000	-1.0218
panel B. PRODUCT					
Variable	High Firms=137		Low Firms=137		diff
	Mean	Median	Mean	Median	t-value
ENT	0.0004	0.0003	0.0017	0.0011	-8.0831
ENTG	0.0297	0.0000	0.4256	0.0000	-1.1435

1) Variable definitions are in Table 1.

4.3 회귀분석

세무조사 가능성 중 세무조사 선정률을 주요설명변수로 하여 이 변수가 접대비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

Table 6.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on the entertainment expenses 1

	ENT		ENTG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012	** 6.049	12.166	** 2.976
AUDITPROB	-0.144	* -2.599	-0.128	* -2.143
SIZE	-0.392	** -4.626	-0.211	* -2.299
DEBT	-0.079	-1.096	0.125	1.598
FOR	0.017	0.302	-0.029	-0.470
OWN	-0.041	-0.809	-0.055	-0.995
ROA	-0.048	-0.795	0.586	* 8.928
NI	-0.122	* -2.031	-0.164	* -2.538
BIG	0.033	0.496	-0.044	-0.618
KOSDAQ	0.147	* 2.051	-0.175	* -2.263
F-Value	16.507	**	9.849	**
Adj. R ²	0.338		0.226	

1) Variable definitions are in Table 1.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percent levels, respectively.

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한다. 종속변수를 매출액 대비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기 대비 당기 접대비 증가율로 각각 다르게 하여 분석한 결과 두 분석 모두 세무조사 선정률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률이 증가할수록 세무조사로 인한 각종 비용 및 감시, 미래현금유출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고자 재량적 비용인 접대비를 줄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업규모와 당기순이익 보고여부가 접대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다른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7은 제시된 모형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을 선정률이 아닌 세무조사 적발률로 달리 측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앞의 분석과 일관되게 세무조사 적발률이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짐으로써 당초 신고금액 대비 결정세액의 크기가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신고금액과 결정세액 간의 차이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과 미래현금유출 등을 회피할 유인이 강하므로 재량적 비용인 접대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회귀계수는 앞의 결과와 유사한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Table 7.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on the entertainment expenses 2

	ENT		ENTG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012	*** 6.346	12.832	*** 3.189
AUDIT PRODUCT	-0.269	*** -3.174	-0.283	*** -3.090
SIZE	-0.264	*** -2.643	-0.068	-0.628
DEBT	-0.036	-0.479	0.175	** 2.175
FOR	0.005	0.087	-0.044	-0.710
OWN	-0.035	-0.687	-0.046	-0.844
ROA	-0.017	-0.266	0.623	*** 9.302
NI	-0.097	-1.621	-0.139	** -2.152
BIG	0.037	0.563	-0.042	-0.598
KOSDAQ	0.150	** 2.112	-0.172	** -2.246
F-Value	17.069	***	10.571	***
Adj. R ²	0.346		0.240	

1) Variable definitions are in Table 1.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percent levels, respectively.

Table 6과 Table 7의 결과에서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이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진 것은 세

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예측하게 하며, 특히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재량적 비용에 대한 경영자의 적극적인 감소 노력을 확인시켜 준다. 즉,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세무조사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 억제와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설업의 비용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건설업의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이라는 확률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가설1과 가설2는 지지되었다. 가설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한다. 즉, 세무조사선정률이 종속변수인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가설1은 채택되었으며, 세무조사적발률 역시 접대비 변수에 대해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져 가설2를 지지하였다.

Table 8. Results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Result
		H1.(AUDIT)	H2.(PRODUCT)	
depend ent var.	ENT	-	-	adopted
	ENTG	-	-	adopted

1) Variable definitions are in <Table 1>.

5. 결론

건설업은 그 성격상 특정 대상을 상대로 접대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산업에 비하여 판매관리 활동에 지나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출된 금액이 성격에 맞는 회계처리항목으로 인식될 수 없거나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만큼 가지급금으로 대체되어 일정금액 이상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의 인식에 기업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대비와 같은 재량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과 손금한도 규제는 기업에게 추정세액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지될 것이므로 기업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와 지출의 재량성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통제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은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을 사용하였으며, 재량적 비용인 종속변수는 접대비 비

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 중 종합건설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응변수가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짐으로써 세무조사 선정률 또는 적발률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의 접대비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무조사 선정률은 접대비 비중 및 접대비 증가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평균차이분석에서도 세무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높은 기업 집단의 접대비 변수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표본대상기업들은 건설업의 필수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접대비를 감소시켜 재량적 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접대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나 신고금액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접대비와 같은 재량적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실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세무조사 확률을 산출하였으며, 특히 재량적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종합건설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과세당국 측면에서는 세무조사가 건설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통제하는 수단일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시켜 주어 세무조사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국내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무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표본대상을 건설업으로 한정하여 전체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 대해 분석할 경우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변수를 국세청 공시자료만을 가지고 측정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의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T. Kim, K. H. Yoon, & S. H. Lee (2015), The Effect of Accet Efficiency and Perk Consumption on Default Risk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60, 159-180.
DOI: <http://dx.doi.org/10.21073/kiar.2015..60.007>
- [2] M. T. Kim & S. H. Lee (2017), The Impact of Excessive Entertainment Expenses on Earnings Management,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22(3), 1-20.

DOI : 10.21737/kjar.2017.06.22.3.1

[3] W. O. Jung, C. W. Park, & J. I. Park (2008), The Effect of Tax Rate Changes on Corporate Spending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Korean Management Review*, 37(1), 165-195.

[4] J. I. Park, K. A. Jeon, & S. I. Kim (2019),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Dividend Payouts and Entertainment Expenses, *Korean Management Review*, 48(5), 1153-1193. DOI: 10.17287/kmr.2019.48.5.1153

[5] Y. J. Lee (2017), An Analysis on The types of Corporate Tax Planning Strategy,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Meeting 2017*, 2, (pp.1-42). Seoul.

[6] J. Slemrod, M. Blumenthal & C. Christian (2001), Taxpayer responses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audit :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Journal of Public Economic*, 79, 455-483. DOI: 10.1016/S0047-2727(99)00107-3

[7] E. S. Lee & M. H. Kim (2006), Transparency Improving Ways in the Practice of Financial Accounting in the Constriction Industry in Korea,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Seoul.

[8] H. J. Park, Y. S. Choi, & H. H. Shin (2004), The Korean Firms' Agency Costs and Firm Value: Role of Foreign Investors' Equity Ownership, *Korean Management Review*, 33(2), 655-682.

[9] Y. Yafeh & O. Yosha (2003), Large Shareholders and Banks: Who monitors and How?, *Economics Journal*, 113(Jan), 128-146. DOI: 10.1111/1468-0297.00087

[10] K. W. Park & K. B. Kim (2011), The Effect of the Degree of Industrial Competition and Cost of Entry on Accounting Alternative of Entertainment Expens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4(6), 3481-3504.

[11] J. I. Park (2008),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Entertainment Expense and Entertainment Expense in Excess of Corporate Tax Deduction Limit,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47, 141-180.

[12] M. T. Kim & H. J. Kwon (2009), The Impacts of Manager's Effort and Perk on Credit Rating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4), 1845-1866.

[13] H. S. Shim & C. S. Kang (2008), The Impact of Entertainment or Donation Expenditure on Tax Audit,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3), 961-984.

[14] H. R. Shim, J. E. Koo, & K. H. Choi (2019), The Effect of the Tax Audit Rates on the Corporate Tax Avoidance,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36(1), 81-111.

[15] Y. S. Koh & J. H. Lee (2011), A Study on Accounting Alternativ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Tax Avoidance,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28(2), 101-132.

[16] J. Hoopes, D. Mescall & J. Pittman (2012), Do IRS Audits Deter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7(5), 1603-1639.

DOI: 10.2308/accr-50187

[17] E. J. Ryou & M. G. Ahn (2020), An Effect of CEO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Activit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Fashion Corpor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1(4), 103-119. DOI: https://doi.org/10.32599/apjb.11.4.202012.103.

[18] H. K. Kwon & M. G. Ahn (2021), The Effect of Firm Characteristics on the Female Employment Ratio,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177-18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1.177

[19] Y. M. Kwak & S. H. Ji (2019),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Investments Horizons of Foreign Investor and Book-Tax Differ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2), 72-8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9.17.2.073

[20] H. S. Shim, J. H. Park, & C. S. Kang (2009), The Book-Tax Difference and Tax Audit,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1), 229-260.

안 미 강(Mi-Gang Ahn)

【장학원】



- 2005년 2월 : 전남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전남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 2011년 7월 ~ 2012년 6월 :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박사후연구원(군산대학교)
- 2012년 9월 ~ 현재 :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업지배구조, 자발적 공시, 이익조정
- E-Mail : anmikang@changwon.ac.kr

이 수 지(Su-Ji Lee)

【장학원】



- 2015년 2월 : 창원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사)
- 2021년 2월 : 창원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관심분야 : 세무조사가능성, 이익조정
- E-Mail : leesj3914@naver.com

박 성 재(Sung-Jae Park)

【장학원】



- 2014년 8월 : 경상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2021년 2월 :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조세회피, 세무조정
- E-Mail : miyoun3008@naver.com